

가진 학교 행복한 교육 고도세+

소통·공감·협력으로 행복을 여는 부안교육

2022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 추진 계획

2022. 4.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차 례

I 기본방향	1
1. 목표 및 기본 관점	1
II 추진 방향	1
III 추진 체계 및 계획	2
【학교폭력 예방 추진대책】	
1.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전담체계	2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3. 학교폭력 예방 유관기관 합동생활교육 추진 계획	6
4. 소통·공감·협력의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8
1)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교사 연수 지원	8
2)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교사 연구회 운영 및 지원	9
3)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학교 운영 및 지원	9
5.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치유회복 강화	10
6. 교육적 차원의 생활교육 및 징계	14
【위기학생 지원대책】	
7. 학생 자살(자해) 예방과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19
8. 이동학대 및 가정폭력	26
IV 부록	
1. 학교폭력 사안처리 10大 유의사항	29
2. 2021년 생활교육 추진 사업 계획	30
3.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33
4. 성관련 사안 대응 체계 강화	36
5. 성폭력 예방교육 근거 법령	40
6. 학교폭력 및 생활관련 의무교육 안내	45

I 기본방향

1. 목표

- 자발적 학교폭력을 예방을 통해 안전한 교육 공동체 문화 조성
-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학생생활교육으로 학교폭력예방
- 통합적이며 맞춤형 지원으로 위기학생 지원 강화

2. 기본 관점

-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교실문화와 학교문화 혁신
- 사안처리와 사후관리 중심의 학교폭력대책을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회복중심 생활교육으로 전환
-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정책과 사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지원
- 학교폭력예방과 위기학생 지원 관련 유관기관 소통과 협력 강화
- 고위기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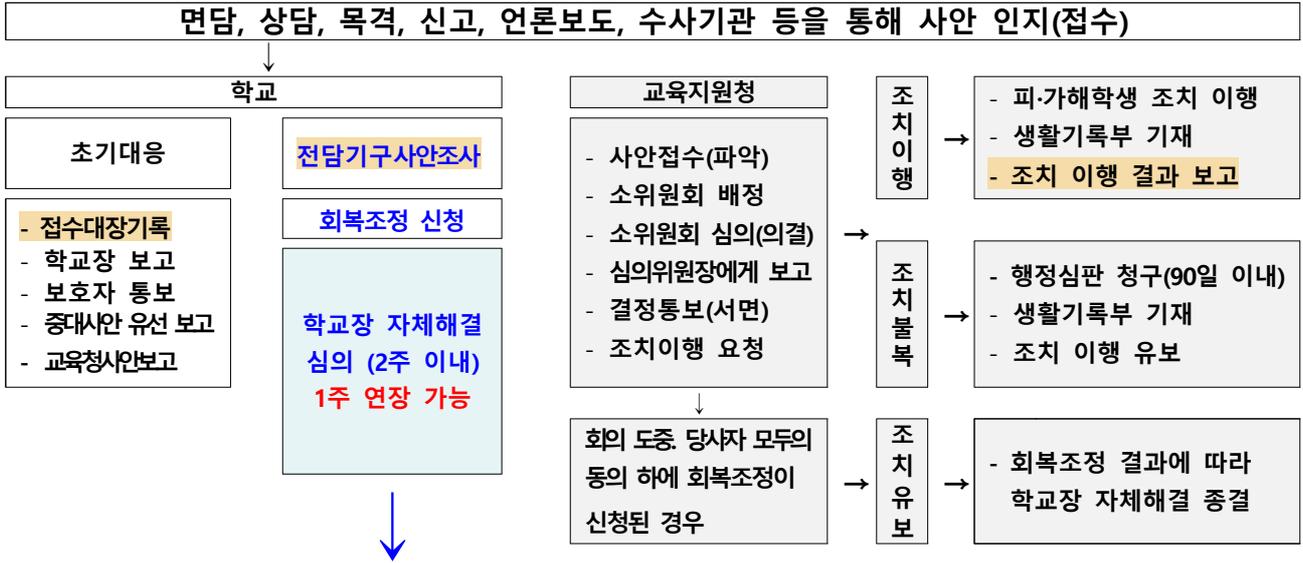
II 추진방향

- 학교문화 혁신을 통한 부적응 학생 최소화
- 교육력 회복과 향상 지원
-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내실 있는 상설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
- 학교폭력예방과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강화
- 고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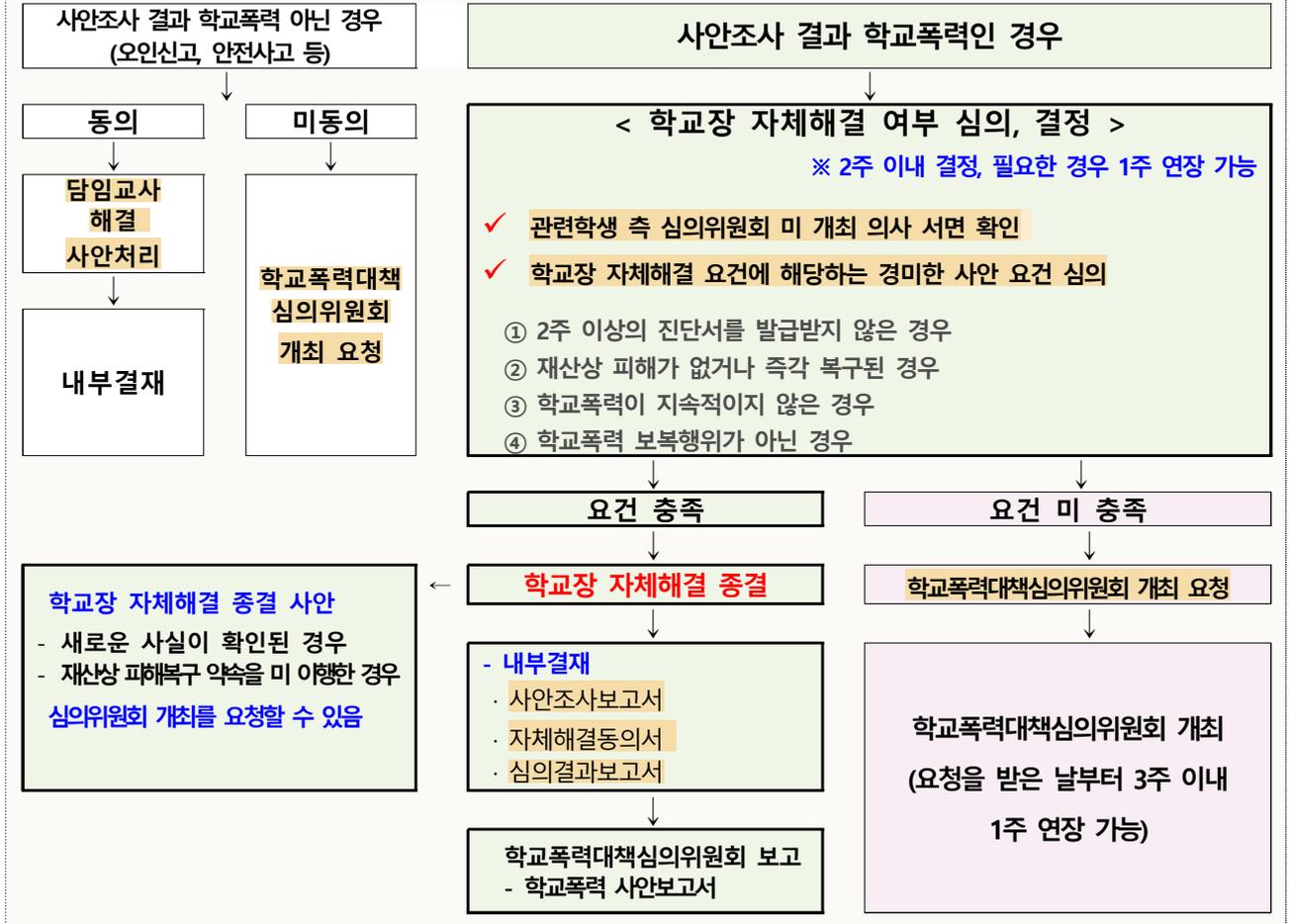
Ⅲ 추진 체계 및 계획

1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전담체계

가.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발생시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절차



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및 역할

학교

- 학교폭력 사안의 가.피해학생에 대한 화해·조정
- 학교폭력예방 교육(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 피.가해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피해학생 치료 지원 및 학교안전공제회 비용 청구 안내
- 학업중단학생: 조기발견(담임), Wee클래스(상담), 교육지원청 보고

교육지원청

- 학교폭력 사안 발생학교에 대한 찾아가는 생활교육 컨설팅: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학생에 대한 화해·분쟁 조정 지원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소통을 통한 실태파악 및 대책수립
- 학업중단학생: Wee센터(전문상담), 컨설팅, 도교육청 보고

도교육청

- 학교폭력의 중대 사안 발생학교에 대한 맞춤형 생활교육 컨설팅
- 학교폭력에 대한 은폐·축소, 부적절한 화해중용 등의 민원 발생 시 즉각 출동하여 신속·공정한 처리 지원
-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학생에 대한 화해·분쟁 조정 지원: '화해분쟁조정단' 운영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소통을 통한 실태파악 및 대책수립
- 학업중단학생: 맞춤형 컨설팅(위험군 학교), 정보제공

□ 전라북도 생활교육(사안처리)지원단 체계도

1차 학교

생활교육지원단

학교장(단장)
교감, 수석교사
인성인권부장
상담교사
**교실(담임교사)중심의
생활교육 실시**

2차 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단

교육지원과장(단장)
초·중 학생생활교육담당 장학사
전문상담사(Wee센터)
인성인권부장(초1, 중1)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3차 전라북도교육청

생활교육지원단

인성건강과장(단장)
학생생활교육담당 장학관
학생생활교육담당 장학사
(초,중,고 상담)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법률지원(변호사)

중대한 민원에 따른 고충 상담 및 자문, 교권관련 법률 자문

다. 부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기학생) 사안처리 지원단 운영

- 1) 목적: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사안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처리(컨설팅) 지원 등
- 2) 명단

순	소속	직위	성명	분야	비고
1	부안교육지원청	과장	이명희	총괄	
2	부안교육지원청	장학사	장은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생활교육(사안처리)	
3	부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상담사	이승재	학교폭력 사안처리	
4	부안교육지원청	전문상담사	최단비	위기학생 지원	
5	부안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김용현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사안처리	
6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팀장	장동환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상담지원	
7	부안군정신건강 복지센터	부팀장	노은진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상담지원	

3) 역할

- 가) 단위학교 사안처리 점검 및 컨설팅 지원
- 나) 민원발생, 은폐·축소 의심 사례 등 학교의 사안처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지원
- 다)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현장 전문가 양성 등

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가. 학교폭력 신고 및 사안 처리 관련 상담 안내

- 1) 학교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창구 다양화
 - 홈페이지 등을 활용,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창구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신고: 117(24시간 운영, 상담·수사·치료·예방이 동시에 이루어짐) - 부안교육지원청홈페이지: 학교폭력 온라인신고센터 - 휴대전화 모바일 신고: m.safe182.go.kr - 온라인 신고: www.safe182.go.kr - 문자신고: #1388, #0117
--

2) 성폭력 신고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신고: 117(24시간 운영, 상담·수사·치료·예방이 동시에 이루어짐) - 부안교육지원청홈페이지: 학교폭력 온라인신고센터
--

3) 학교폭력 관련 참고 자료 및 사이트

-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14.12)
- 「생명존중 길라잡이」(교육부, 2015.2)
- 「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서울시교육청, 2016.3)
- 학교폭력예방 종합포탈사이트: 교육부(<http://www.dorandoran.go.kr>)
-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사이트: 서울시교육청(<http://www.sen.go.kr>)
- 학교폭력예방 신고센터: 경찰청(<http://www.safe182.go.kr>)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http://www.parents.go.kr>

4)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가) 주관기관: 부안군
- 나) 역할: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상담(복지)지원
- 다) 인원: 팀장 외 4명

5)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 가) 주관기관: 부안군
- 나) 역할: 위기학생(자살, 자해) 상담 지원
- 다) 인원: 센터장 외 4명

6)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4명

- 가) 주관기관: 부안경찰서(여성청소년계 T. 580-0150)
- 나) 역할: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사안 해결 지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 다) 담당학교

전담경찰관	담당 학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김용현	공소초등학교, 동북초등학교 동진초등학교, 부안남초등학교 영전초등학교, 주산초등학교 줄포초등학교, 행안초등학교	주산중학교, 줄포중학교 변산중학교, 위도중학교 보안중학교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위도고등학교
박경래	계화초등학교, 백룡초등학교 백 산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창북초등학교, 위도초(식도분교)	계화중학교, 상서중학교 백산중학교, 하서중학교 부안여중학교	부안제일고등학교, 서림여자고등학교 백산고등학교, 부안여고등학교
이남호	격포초등학교, 부안동초등학교 변산초등학교	부안중학교, 변산서중학교 삼남중학교	부안고등학교
박재은	하서초등학교, 장신초등학교 백련초등학교, 상서초등학교 우덕초등학교		

3 학교폭력 예방 유관기관 합동생활교육 추진 계획

가. 학교폭력 유관기관 합동 교외생활지도

1) 목적

- 학생 비행 취약지역에 대한 교외 생활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
-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교육으로 학생 안전사고 발생 예방
- 적극적인 교외생활교육으로 학교폭력 발생 예방

2) 교육내용

- 학생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교육
-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예방
- 남·여학생 혼숙 및 풍기문란(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 행위 금지 지도
- 우범지역 및 위험 예상 지역 순회 순찰 지도 등
- 음주·흡연 등 생활규정 위반에 따른 생활교육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건전 아르바이트 금지 지도
- 귀가지도
 - 하교 후 불필요한 배회 및 우범지역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
 - 등·하교 중 유사시 부모 또는 학교에 알리고, 하교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부모님께 자신의 행선지를 알리도록 교육

3) 실시계획

일시	장소	합동생활 교육반	비고
2022.3.	부안읍 일원 (신학기 학교폭력예방)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경찰서 부안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관기관합동 생활교육(20여명)
2022.4.	줄포면 (줄포 터미널 앞)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경찰서 부안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관기관합동 생활교육(20여명)
2022.5.	백산면 (농협하나로마트 부근)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경찰서 부안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관기관합동 생활교육(20여명)
2022.6.	창북면 (면사무소 앞 로터리)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경찰서 부안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관기관합동 생활교육(20여명)
2022.7.	여름방학 합동 교외생활교육 (격포, 변산)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경찰서 및 해양경찰 부안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고등학교	2022.7월말~8월초 14일간
2022.8.			

		인성인권부장(20명)	
2022.9.	상서면 (면사무소 앞)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경찰서 부안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관기관합동 생활교육(20여명)
2022.10.	공소면 (공소 터미널 앞)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경찰서 부안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관기관합동 생활교육(20여명)
2022.11.	부안읍 (수학능력 시험 전·후)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경찰서 부안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관기관합동 생활교육(20여명)
2022.12.	부안읍 (학기말 방학 및 연말 연시)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경찰서 부안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관기관합동 생활교육(20여명)
2023.1.	부안읍 (터미널 앞 사거리)	부안교육지원청 부안경찰서 부안군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관기관합동 생활교육(20여명)
2023.2.	부안읍 일원 (졸업식 생활교육)	부안중, 삼남중, 낭주중, 부안고, 부안제일고, 부안여상, 부안여고 각 학교 인성인권부장	유관기관합동 생활교육(20여명)

-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신속 보고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
- 합동 교외생활교육 기간 중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순회 지도

나. 학교 홈페이지 통한 신고 및 사이버 상담실 운영

-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상담실 개설·운영)

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 모바일 웹은 <학교여성폭력신고> 메뉴 터치

- 학교폭력신고센터는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경찰청 또는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Wee센터, CYS-Net)로 사건을 이송
- 경찰청 및 지원센터는 신고센터로 이송을 받은 사안의 최종처리 결과를 해당 학교 및 학교폭력신고센터에 통보
 - ※ 피해자가 학교에 신고 내용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 통보
- 통보를 받은 학교의 학교장은 사안처리 지침에 따른 사안처리 후 사건 종결

다. 학교 안전망 구축

□ 배움터자원봉사자 배치

- 배움터 지킴이 : 3개교 배치(초1교, 중1교, 고1교)
- 학교주변 순찰활동, 출입자 통제, 등·하교 시 생활교육 등

□ 초등학생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 지원내용 : 초등 안심알리미(등하교 상황 문자 통보) 서비스
- 지원대상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1~3학년) 우선 지원, 사회 배려계층 학생,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
※ 지원 대상 외에도 수익자 부담으로 이용 가능

□ '학생안전지역'(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 학교반경 200M 이내 학교주변 위험요인 해소
- 각종범죄, 교통사고, 불량식품 등으로 부터 학생보호

□ 학교 주변 순찰활동 강화

- 경찰과 협조하여 학교 및 학원, 유흥가, 취약지구 주변 순찰활동 강화
- 녹색어머니회, 패트롤 맘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과 유관단체 등과 연계한 학교 주변 순찰활동 강화

□ 불안경찰서 학교폭력(청소년범죄) 신속대응 협의체

- 주관기관: 불안경찰서(여성청소년과)
- 대상사건: 학교폭력, 청소년 사회적 이슈화 사건 등(※ 모든 학교폭력 사안 아님)
- 역할: 학교폭력 사안 정보공유 및 협조사항 조율, 피해자 보호조치 등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 요청 등

4 소통·공감·협력의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가. 교육공동체의 관계(신뢰) 회복을 위한 회복중심 생활교육

1)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교사 연수지원

- 통제 중심이 아닌 존중과 자발적 책임, 협력을 이끌어 내는 생활교육의 이해
- 교육 공동체의 본질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기본 과정 교육
- 학교 현장의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지원
- 학교 현장의 갈등 상황에 대한 중재, 조정, 해결 등의 전문가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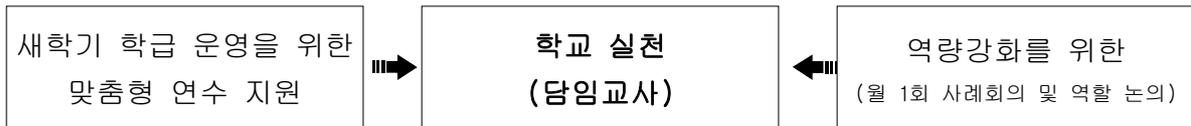
- 대상: 초 · 중 · 고등학교 희망교원
- 시기: 2022년 1월, 8월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을 운영을 위한 학급운영 중점
 - 단계별 교사 연수 추진

단계	구분	비고
1단계	① 회복적 생활교육 이해와 새학기 학급운영의 기초(Restorative Discipline1) 주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 이해와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세우기	1월
2단계	② 회복적 생활교육 이해와 새학기 학급운영의 기초(Restorative Discipline2) 주제: 평화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전환 이해와 조정 능력	
3단계	③ 갈등 조정 및 동아리 운영 평가(Restorative Discipline3) 주제: 갈등 이후 공동체 재통합과 회복적 대화모임	8월

- 역할
 - 갈등 전환을 위한 회복적 조정 전문가 및 강사 요원으로 활동
 -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동아리)연구회 추진(월 1회 사례 회의 및 역할 논의)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지역별 갈등 조정(중재) 협의체 구성

2)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교사 연구회 운영 및 지원

- 목적: 학교별 동학년 회복적 생활교육을 토대로 학급운영을 시도하는 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교사 저변 확대
- 대상: 회복바람꽃
- 시기: 2022년 3월 ~ 2023년 2월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교사 연대 활성화 방안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과 확산을 위한 중재모델(회복적 써클)

3)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학교 운영 및 지원

- 목적: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을 토대로 학급 운영을 시도하고 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교사 저변 확대
- 대상: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학교
- 시기: 선정 이후 학교와 협의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학교 운영 방안
 -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 운영을 위한 학교 선정
 - 단계별 교사연수 추진: 학생 · 학부모 · 교사(교직원) 대상

단계	구분	비고
1년 차	회복적 학교의 개념 이해와 기본 훈련 단계	
2년 차	회복적 학교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및 사례 축적 단계	
3년 차	회복적 학교로 정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구조 운영단계	

5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 및 치유회복 강화

가.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1) 목적

- 자기에 대한 이해하기
- 타인에 대한 이해하기
-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실천하기

2) 내용

구분	회기	목표	세부활동
도입	1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목적 설명 및 집단 구조화 · 관계형성을 위한 신체활동 및 게임 (머리 어깨 무릎 발) · 종이테이프 붙이기, 내가 누구입니까? · 형용사로 한마디
주요활동	2	다르면서 비슷한 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지하고 받쳐주기 · 자신에 대한 이해 · 우째 좀 난처하네요! · 나만의 가진 특징 · 생각과 느낌 나누기
마무리	3	우리는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마사, 반전하기(신체적 근육 이완) · 협업능력 증진 · 마주 서서 함께 앉고 일어나기 · 풍선 터트리기 · 오늘 나는...

3) 기대효과

- 서로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음을 인식한다.
-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나. 심리검사

1) 목적

- 위(Wee)센터에 내방한 아동, 청소년들의 인지 · 성격 · 정서 등 전반적인 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상담과 치료계획 수립을 돕는다.
- 개인의 강점과 잠재 능력을 포함하여 내담자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2)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성격검사	MBTI / MMTIC / 애니어그램(초, 중, 고) SAI 강점검사((초, 중, 고)	
학습검사	MLST 학습전략검사(초, 중, 고) SLT 자기조절 학습검사(초, 중, 고)	
진로검사	Holland 진로탐색검사 II Holland 진로발달검사	
행동검사	CBCL6-18(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 부모용 TRF(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 교사용 YSR(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 자가보고형	
정신건강 및 인성검사	AMHI(초, 중, 고) / MMPI-A KCYP(초, 중, 고) / 미디어 중독(초)	

3) 기대효과

- 전문 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그에 따른 적합한 상담과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다. 심리치료 연계 지원 및 사후관리

1) 목적

-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연계 지원을 통한 통합적, 포괄적 서비스 제공한다.
- 전문심리치료, 정신건강의학과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상담의 효과성을 높인다.

2)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상담센터	전북해바라기아동센터, 조우심리상담센터, 아이들케어 상담치료센터, 원광심리치료센터, 전북예술심리재활센터, 정읍마음나무상담센터 멘토발달상담센터, 마더심리학습센터	1인당 100만원 이내 지원
병 원	부안하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현구 진료원장 김제제일신경정신과의원 박지훈 진료원장 전주다솜신경정신과의원 박종조 진료원장 전주아이나래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기홍 진료원장	입원치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 1인당 100만원 이내 지원
부안군정신건강 복지센터	김제신세계병원 김형준 진료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시 자문

3) 기대효과

- 위기학생의 심리치료 연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학습 의욕 고취 및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으로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한다.
- 초기에 적절한 치료 개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병리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한다.
-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및 학부모, 자문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정신건강 의학과 자문의를 상시 연계하여 신속하고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라. 학교폭력 특별교육

1) 학교폭력 학생 프로그램

가) 목적

- 예방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
-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통해 긍정적 자아성 회복
-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터득

나) 내용

프로그램명	세부 활동	소요시간
학교폭력예방 교육	·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 · 학교폭력의 의미 및 법률 이해	60분
감정 알아차리기	· 나를 힘들게 했던 점 / 현재 나의 기분 · 감정 일기장 쓰기	60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 생각의 수레바퀴 · 두 마음 이야기 (부정적인 생각 vs 긍정적인 생각)	60분
미안해요!	· 피해학생에게 편지 쓰기 · 나의 각오 및 다짐 적기 ·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나누기	60분

다) 기대효과

- 자신의 감정조절 능력을 향상한다.
-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 사회성 기술 습득을 통하여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교폭력 학부모 프로그램

가) 목적

-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및 책임감 인식
-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자녀와 원활한 소통방법 안내

나) 내용

프로그램명	세부 활동	소요시간
학교폭력예방교육	·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 · 학교폭력의 의미 및 법률 이해 (학교폭력의 정의, 종류 등 설명)	60분
마음열기	· 심리적 어려움 공감하기	60분
부모-자녀 관계 향상	·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맺기 · 마음을 열어주는 대화(감정코칭)	60분
효과적인 부모 역할	· 마음의 편지쓰기 · 새로운 출발 다짐 적기	60분

다) 기대효과

-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모-자녀 상호관계에 자신감 및 안정감을 확보한다.
- 부모의 내면의 치유를 통한 부모-자녀 성장을 기대한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여 자녀와 원활한 소통을 한다.

3) 학교폭력 피해학생 정서안정 프로그램

가) 목적

- 정서적 안정을 통한 마음의 상처 치유
-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성 향상
-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나) 내용

프로그램명	세부 활동	소요시간
소중한 만남	·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 · 자기소개 / 자아상 그리기	60분
빛나는 나의 마음	· 감정카드 게임 · 감정 마인드맵(감정표출)	60분
특별한 나!	· 의사소통 방법(I-Message) ·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그리기	60분
새로운 출발!	· 나에게 편지 쓰기 · 동영상 시청('너는 특별하단다') · 전반적인 프로그램 느낀점 및 소감	60분

다) 기대효과

-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표현한다.
- 정서적 안정을 통하여 자존감을 회복한다.
- 관계적 회복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인다.

6 교육적 차원의 학생 생활교육 및 징계

가. 근거(초중등교육법 제18조)

○ 제18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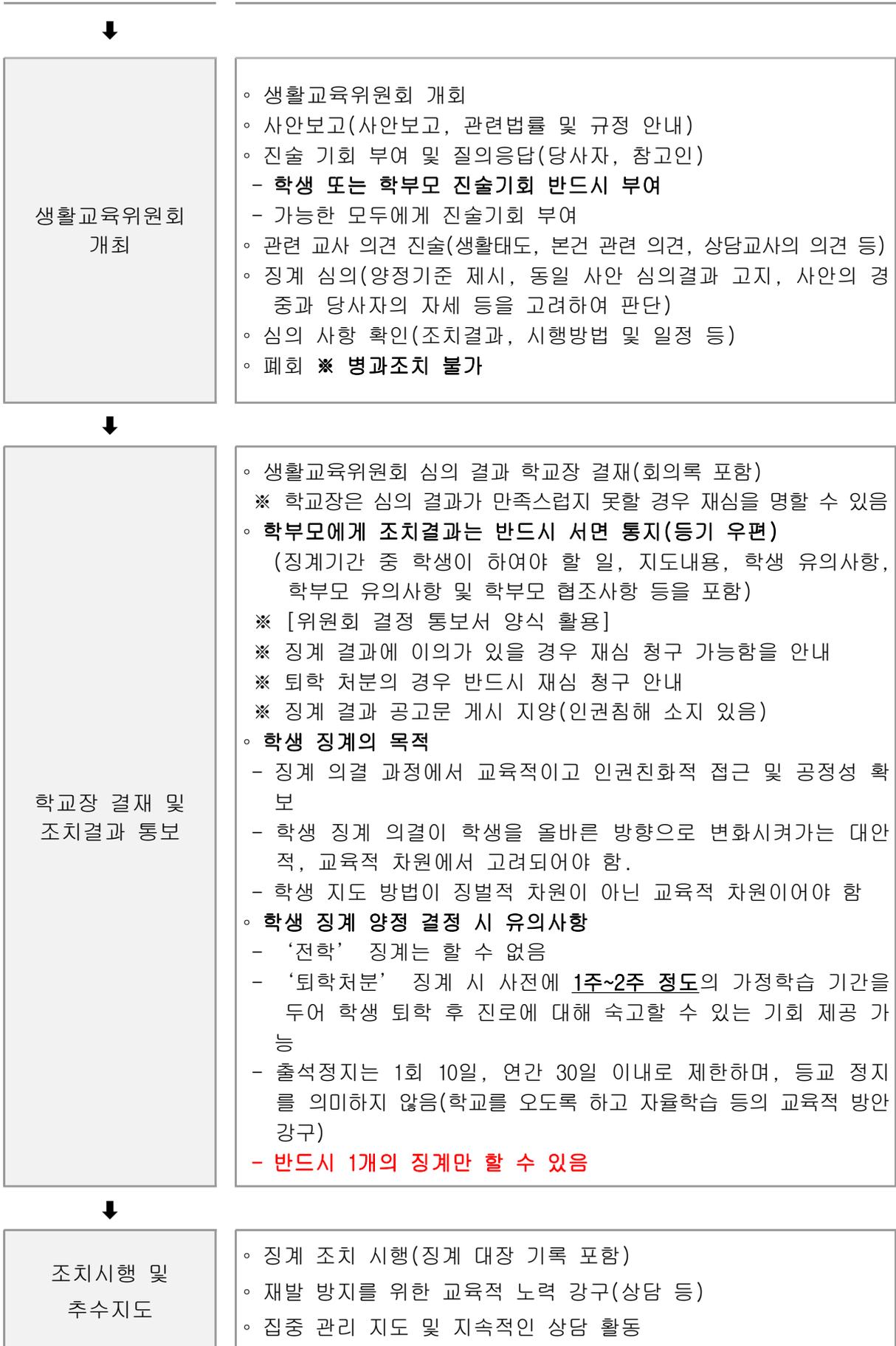
- 구성: 학교 규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반드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재량] 위원장은 교감(교무부장), 부위원장은 인성인권부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재량]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약간 명을 위원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다.

- 기능: 학생 생활 교육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단위 학교 학생 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회의록은 결재·보관하며, 의결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한다.
- 위원회 운영 기본 방침
 -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위원회 개최 전 사전에 알리고, 그 결과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상담을 통하여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다. 단위 학생징계 절차

처리 과정	과정별 주요 처리 내용				
<p>학생생활규정 위반 사안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의 경중에 따른 교육적 구분 <table border="1" data-bbox="549 443 1394 533"> <tr> <td>경미한 사안</td> <td>담임 교사 인계 ▶ 훈계 또는 상담</td> </tr> <tr> <td>중대 사안</td> <td>인성인권부로 인계 ▶ 위원회 회부</td> </tr> </table> 생활교육 위반 사실 1차 통보 ▶ 학부모 	경미한 사안	담임 교사 인계 ▶ 훈계 또는 상담	중대 사안	인성인권부로 인계 ▶ 위원회 회부
경미한 사안	담임 교사 인계 ▶ 훈계 또는 상담				
중대 사안	인성인권부로 인계 ▶ 위원회 회부				
<p>사안조사 및 사안 보고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학생 조사 및 객관적 증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사안 진술서 양식 활용] 학생 권리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될 수 있음을 안내 - 심의 대상일 경우 보호자에게 미리 알림 학생 사안 조사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압적인 조사, 회유, 시인 강요 등 금지 - 여학생 성관련 사안 조사 시 반드시 여교사 참여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 공간 가급적 피할 것 - 여러 학생 관련 사항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조사 권장 (사안 조작 예방 및 학생 간 사생활 보호) - 충분히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 				
<p>사안보고 및 학부모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 보고 ▶ 학교장 필요한 경우 학부모 상담을 위한 내교 통지 ▶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 일자 및 시간, 내용 등 				
<p>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칙 위반 행위의 경위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하게 결정 관련 학생 자료 보강(지도노력 등 추가자료) 				
<p>생활교육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 ▶ 2차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명기 위원장과 학교장에게 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생활교육위원회 제출용 서류 준비(개요, 비행경위와 학칙위반정도 및 학칙위반 조항, 기타 학생에 대하여 참고할 사항, 문답서, 자술서) 				



라. 징계에 따른 학교 단위 이의 제기 및 심의 절차

단계	내용
재심의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규정에 따른 학생 징계: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함 ◦ [학교장 재심의 요구] 학교장이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이의 제기]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재심의 가능 ◦ [교육적 판단]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교육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재심을 요구하여 기간 단축 등 징계 경감 가능(학생생활규정에 근거 마련 필요) ◦ 재심의 관련 단위학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 신청서 서식 제공 - 소위원회 구성 및 재심의 신청 기간(예_3일 이내) 등 마련 ◦ 학생 및 보호자: 신청서에 이의 제기 사유를 분명히 기재하여 제출
단위학교 재심의 여부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만 재심의 함으로써 학생중심으로 접근하되 업무 효율성 제고) ◦ 소위원회: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예) 교무회의 또는 교감, 해당학년부장, 인성인권부장 3인 구성 등
재심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를 통해 재심의 사유 있음으로 결정되면 위원회 개최 후 재심의 ◦ 학교 차원의 재심의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학생·보호자 입장 최대한 고려 - 재심의 결과는 원처분과 같거나 낮은 처분이 내려져야 함 -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및 인격 존중 -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징계로 개선의 기회 부여 - 재심의 결정 시 조치(징계) 집행 유보
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통보 → 조치 시행

마. 전북학생징계조정위원회

- 대상: 국.공.사립학교 학생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 기관: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북학생징계조정위원회
 -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 서면(①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② 피청구인 ③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④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징계조정위원회에 제출
 - 재심 신청 시 조치(징계) 집행 유보

● 제출 안내

- [청구인] 제출 자료
 - [필수] 재심청구서, 위원회 결정 통보서
 - [권장] 청구사유서, 학생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계획서 등
- [학 교] 제출 자료
 - [필수] 위원회 회의록, 사안 조사서, 담임 또는 학생부장 의견서
- 제출 관련 기타 안내
 - 우편: (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1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북학생징계조정위원회
 - 팩스: 063-220-9411 / - 문의: 063-239-3743

바. 학생선도(징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차이

구 분	학생선도(징계) 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근 거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위원회 구성	◦ [재량] 규정으로 정함	◦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 [반드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구성
조 치 (징계)	◦ 1호~5호까지 징계(1개만 조치) - 1호: 학교내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특별교육이수 - 4호: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5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 ※ '전학' 조치는 할 수 없음	◦ 1호~9호까지 조치(병과 조치 가능)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초·중학생 제외)
출 석 정 지 기 간	◦ 출석정지 : 기간, 횟수 제한됨 - 1회 10일, 연간 30일 이내 [~부터 ~까지(○일간)]	◦ 출석정지: 기간 제한 없음 ※ 단, 명확한 기간을 명시해야 함 [~부터 ~까지(○일간)]
주 의 사 항 (공통)	- 출석정지: '등교정지'가 아니므로 학교 내에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 단, 보호자 요청 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 처리 가능(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에 나와도 무단결석 처리) - 조치(징계)로 인한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 학교 내의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가. 목적과 필요성

- 1) 학생자살(자해)과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현장에서 조기에 자살위기관리와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2) 학생 자살위기(자해) 상황을 사전(후)에 대비하고 위기상황 시 즉각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기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 3)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4) 정신 건강 증진으로 자살(자해) 예방 효과 제고

나. 추진방향

- 1)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자해)예방교육의 내실화 모색
- 2) 지역사회 자살(자해)예방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 3) 학교 실정에 맞는 지도, 점검, 시행으로의 관리체계 확립
- 4) 자살(자해)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처리 철저
- 5) 자살(자해)예방교육 내용의 체계화와 다양화 모색을 통한 실질적인 자살(자해)예방교육 실현
- 6)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위해 필요 시 유인물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학부모 교육을 실시 안내
- 7) 학생자살(자해)위기 예방과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
- 8)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개입하여 학생, 유가족, 교원 대상 심리치료지원과 외부(학부모와 언론 등) 대응 등을 통한 학교 정상 기능 회복 지원

다. 학생 자살(자해) 예방과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1) 위기관리지원단 구성과 자격****가) 구성**

- 교육지원과장을 지원단장으로 하고 협력기관, 자문위원(지역사회 전문가 등), 사후 사안처리와 상담 관리팀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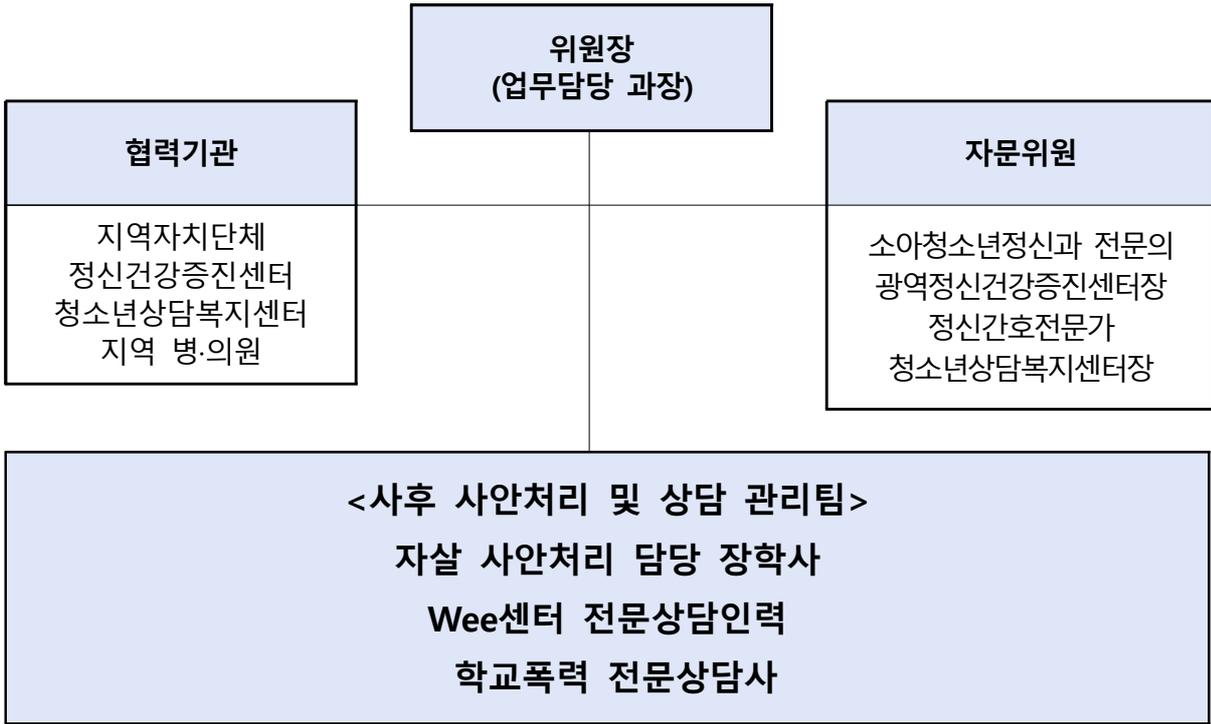
나) 자격

- 교육지원과장(위기관리의 권한 책임을 지닌 업무담당과장)
- 협력기관(지역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 병·의원,

민간 상담센터 등)

- 자문위원(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신간호전문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
- 사후 사안처리와 상담 관리팀(자살 사안처리 담당 장학사, 전문상담순회교사, Wee센터 전문상담사, 학교폭력전문상담사 등)

다) 학생자살(자해) 예방과 위기관리시스템 체계도



라) 학생자살(자해) 위기관리위원 명단 및 협력기관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위원장	이명희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 과장	
자문위원	장동환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자문위원	임은성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장 (김제효병원 진료과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위원	노은진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부팀장	
사안처리	장은희	부안교육지원청	학생생활 담당 장학사	

사안처리	이승재	부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상담관리	최단비	부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사	
협력기관				
구분	담당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협력기관	임은성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581-5830	581-5820
협력기관	장동환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3-8772	581-2446
협력기관	임은성	김제 효병원	545-8700	545-8600

2) 위기관리지원단 역할

가) 자살(자해) 사건 발생 당일

-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 위기개입 요청(연구원 파견 예정)
- 자살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정보 파악
- 단위학교 전체 교사회의를 통한 역할 안내
- 부안지원청 Wee센터 지원인력 확보

나) 사건발생 2일차

- 해당학교 반별 개입 지원을 위한 Wee센터 인력 대상 위기개입 교육 실시
- 필요 시, 위기개입 전문기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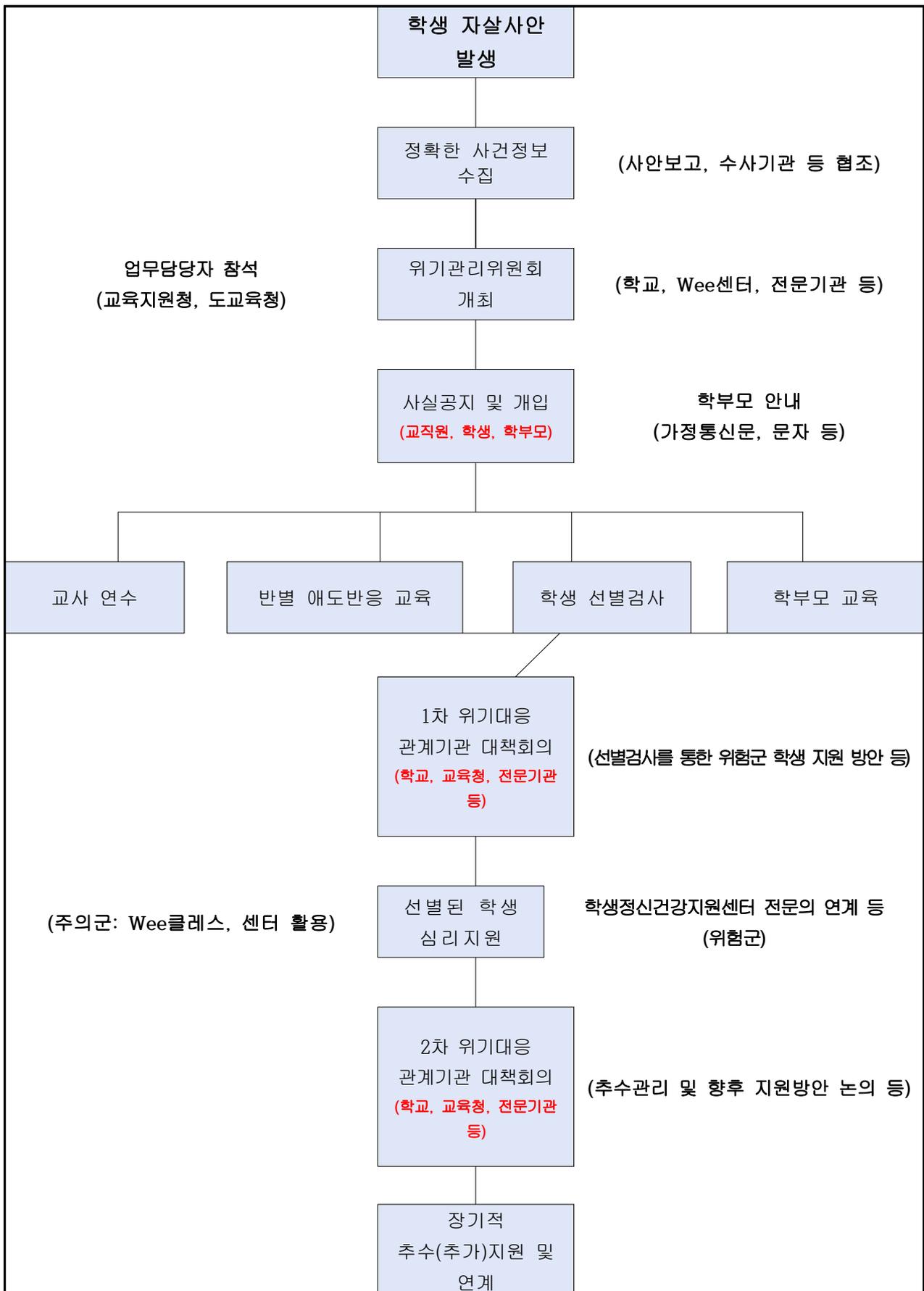
다) 사건발생 3일 ~ 1주일

- 해당학교 교사·학생 대상 위기개입 교육 및 심리검사 시 필요인력 지원
- 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고위험군에 대한 해당 지역 의료기관 연계

라) 사건발생 1주일 이후

- 학생들의 지속 관찰을 위한 월 단위 추후 심리검사 지원

마) 단위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절차도(학생자살 사안 발생 시_예시안)



3) 학생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

가) 자살 예방관리(자살생각 및 위험성 평가)

- 경미한 징후라도 자살징후를 보이는 학생을 발견한 모든 교사는 담임이나 보건 교사에게 알려 자살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1) 상담기록지 작성

- 상담기록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치료유지 및 지속상담 여부를 확인, 최소 1개월 동안은 주 1회 이상 관찰·기록

(2) 자살위험성 평가

- 학생과 라포를 형성한 후에 질문하는 것이 좋다.
-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자살생각, 자살위험성 정도, 우울, 불안, 충동성을 검사, 평가한다.
- 자살위험성 평가에서 중간이상의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학부모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동의한 경우 치료 및 상담기관에 학생을 데리고 가서 상담을 의뢰하고 치료 받도록 한다.

나) 자살위기 상황 대응방안

(1) 자살위기학생 발견 시 관리방안

- 해당학생의 담임, 학년부장, 보건교사, 생활지도 교사 등에게 연락
-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 보호자 연락
- 교육청에 보고
- 임시직원 회의 : 교직원 간 정보와 이해 공유
- 대응의 경과 확인과 평가
- 활동 종료까지의 사안 기록 정리
- 해당학교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 교사 공조 하에 해당학생 사후관리

(2) 자살 시도학생 관리

- 다시 시도할 수 있으니, 면밀히 관찰하고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을 제거하며 심리상담 및 정신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
- 자살 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공감과 정서적 지지
- 보호자에게 연락-원인 제거에 함께 노력
- 자살시도 학생의 영향을 받을 만한 학생을 파악하여 심층상담
- 자살시도 학생이 정상적으로 적응하도록 정서적 지원
- 해당 학교 전 교직원에게 자살시도학생 대응에 대해 알려주고 협조 요청

다) 사안(자살·자해) 발생시 처리 절차

- (1) 절차: 사안 인지 - 학교 관리자 보고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 (2)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여부: 학교가 해당 학생을 고위험군이라 판단했을 때 학교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가능
- (3) 세부 내용

자살사도 및 자해사안 발생(사안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또는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교원에게 연락(관리자에게 보고) - 보호자에게 연락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상황파악 - 구체적 대응책 및 학생 지원 방안 마련 - 위원별 역할 분담 - (필요시) 교육지원청 학생위기지원단 지원요청 및 전문기관협조 요청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개최는 사례회의(솔루션회의)의 개념임(회의 내용 비밀 보장) ☞ 사안에 따라 해당 학생 부모에게 연락 여부 및 참석 여부 결정 필요 ☞ 사안에 따라 외부 자문위원(전문가) 참석 가능
사안보고	교육지원청 서면 보고

(4) 자살사안 발생 시 처리절차

학생 자살사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발견자는 112, 119 신고 및 사고현장 보존 - 보호자에게 연락 - 담임교사 또는 위기관리위원회 교원에게 연락 - 교육지원청 유선보고(24시간이내) - 서면보고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상황파악(사고경위, 목격자 파악 등) - 구체적 대응책 마련 및 역할 분담 - 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지원요청 및 전문기관협조 요청
유가족위문 및 공식 입장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방문을 통한 깊은 애도 표현(가족들의 정서 상태 파악) - 학생 / 학부모 / 언론보도 ☞ 공개할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 사실적 정보만을 제공함 - 학생들에게 자살소식 공지에 있어 모방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함
전문기관 협력-학교 및 교사 지원 (별도 특별상담실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을 통한 협력 ☞ 솔루션회의를 통한 해당교 컨설팅 지원 - 교직원힐링센터를 통한 교사 지원 - 필요에 따라 학교 내 특별상담실 운영 가능 ☞ 자살목격 학생 및 심리적 충격이 큰 취약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심리상담 지원 또는 외부기관 연계, 최소 2주간 운영
위기극복을 위한 교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실과 애도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추모 방법과 일정 결정 - 추모관련 프로그램 운영(‘잘가 친구야’ 프로그램 등)

라) 세부 내용

(1)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 자살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
- 우선적으로 자살 학생 가족을 접촉하고 애도 표현
- 자살 사건이 학교 내에 미칠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사후개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2) 학생자살(시도) 사안 발생 시 즉시 보고(유선보고 포함)

(가) 단위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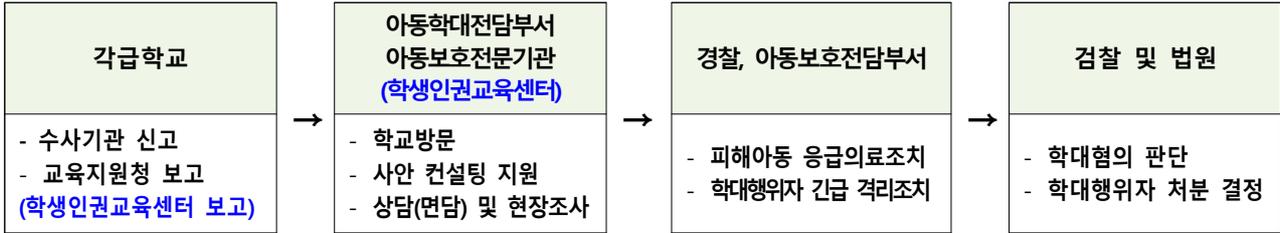
- 자살(시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정보 파악
- 단위학교 →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유선 포함 지원 요청)
- 단위학교 자살 사안 위기 개입팀 소집 및 협의(역할 분담)

- (1) 학부모 담당 : 학부모 공지문 작성 및 발송, 필요할 경우 부모교육 준비 및 진행
- (2) 교사 담당 : 전체 교사에 대한 사건 공지, 각 담당 확인
- (3) 언론 담당 : 언론보도 내용 관리 및 학교 의견은 담당이 전달. 주로 교감이 담당
- (4) 지역 지원기관 담당 : 필요할 경우 지역 Wee센터, 위기개입전문기관, 지역의료기관, 경찰 등 연계
- (5) 유가족 담당 : 유가족과의 의사소통 담당. 사망 원인 및 장례식 관련 정보 확인
- (6) 위험군 학생 담당 : 위험 학생 구분,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치료지원. 학교 내 집중관리
- (7)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 학생 담당 : 신체적 고통 호소 학생 또는 사고나 부상을 입은 학생 보호
- (8) 학생 추모 행사 담당 : 학생들의 추모행사나 미디어 영상 관찰 및 관리
- (9) 루머가 퍼지지 않도록 학생에 대한 사실 공지, 학생들에게 정상적 애도 반응 설명, 평소 학생들에 대한 지식과 아이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학생 관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분류하여 위험군 학생 담당 교사와 유기적 업무 협조

8 아동학대·가정폭력 사안 발생 시 신고 및 사안처리 체계

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112 신고 및 교육지원청 보고
나. 아동학대(가정폭력)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 아동학대 사안처리 절차(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 사안 보고서는 '학교폭력 사안보고' 양식으로 하되, 언론보도나 중대사안의 경우 '아동학대 보고 요지' 별도 작성하여 보고

다. 아동학대(가정폭력)담당자 및 협력기관

순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장은희	부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생활)담당장학사	
2	이승재	부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문상담사	
3	최단비	부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실장	
4	박상경	부안군청	아동학대 담당 주무관	
협력기관				
구분	담당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협력기관	이한솔	전라북도아동보고전문기관	283-1391	
	장동환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3-8772	581-2446
	김용현	부안경찰서	580-0151	580-0312

● 코로나 19에 따른 관찰·상담 강화

- 원격수업 기간: 유선 및 온라인(화상) 등으로 건강상태, 원격수업 참여도 등을 상담하도록 권고
- 등교수업 기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및 생활지도 실시하고 위기의심학생 특별관리

※ 특별관리(예시): 유선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건강상태 확인 및 생활지도

● 아동학대 신고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 전화 (예시)

- ○○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 ○○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에 대해 의 이유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합니다.
- 아동의 현재 상황은 합니다.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심신상태, 가정상황 등)
- 아동의 인적 상황은 입니다.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은입니다.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 신고자는 ○○○입니다.

● **아동학대 사안보고**

- 사안보고 절차: 각급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Fax 581-1318)
* 언론보도 등 중대사안인 경우: 붙임1, 붙임2 모두 작성 후 보고(신변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비밀엄수 의무 준수)
-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시군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동시 보고
- 학대행위자가 교사인 경우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동시 보고
- 아동학대 최초 보고 이후 조치 및 변동 사항에 대해 최종 보고

● **아동학대 조사협조**

-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후 경찰, 부안군청,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조사 실시
- 학교는 피해학생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아동학대 사안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적용 여부**

- 넓은 의미로 해석할 때 아동학대도 피해자가 학생이므로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
- 아동학대 사안은 피해아동에 대한 비밀스러운 보호조치 필요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학대행위자 등에게 관련자료 유출 및 피해 아동과 신고인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내부결재)
* 학교폭력법상 피해학생이므로 출석인정, 성적불이익 금지 등의 보호조치는 지원하여야 함

1.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방과 후 등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 수업시간 중 조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민원 방지
2. 사안 조사 시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 “교사 강요에 의한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피·가해측 출석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진술, 진술권 포기 등의 등 불출석 시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 전담기구 조사결과에 대한 관련 학생 측 ‘진술기회 제한’ 민원 방지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는 반드시 ‘학교장 명의’ 로 서면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를 안내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절차적 하자’ 를 제기하는 민원 방지
* 선도위원회 결과도 반드시 ‘학교장 명의’ 로 서면통보하고, 재심 등 불복절차(초등교육법 제18조의 2)를 안내한다.
5. 학교폭력 사안은 선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피해학생(보호자)이 학교폭력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하는 것은 학교폭력 은폐·축소, 학생부 기재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민원 제기 예방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다.
⇒ 피해학생(보호자)이 반대하는 조치 결정 시 거부 민원 예방
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가해 당사자, 목격자 등의 진술서 등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예방 및 사안 관련 학생·학부모(특히, 목격자) 보호
8.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절차상 문제로 인한 민원 방지
9.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방지
10. 학교폭력 사안발생 시 초기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피해·가 피해 학부모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안 관련 학부모가 학교, 교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할 경우 학교의 사안처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안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아 특별히 유의

1. 학교폭력(위기학생) 사안처리지원단 구성 및 컨설팅 실시

가. 기간: 2022. 3월 ~ 2023. 2월

나. 내용: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둘러싼 갈등문제 및 위기학생을 위한 학교현장 컨설팅을 상시 지원

다. 컨설팅 학교 선정 방법

- 1) 교육지원청에서 선정 및 컨설팅 희망교에 지원단이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학교폭력 관련 컨설팅 실시
- 2) 초·중학교: ①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
② 학교폭력이 없더라도 컨설팅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
- 3) 고등학교: ① 학교폭력과 학업중단학생이 많은 학교
② 학교폭력이 없더라도 컨설팅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

3. 학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실 구축 및 관리 점검

가. 기간: 2022. 3월 중

나. 내용: 학교폭력 사이버 상담 및 신고 기능 활성화

※ 관련근거: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상담실 개설·운영)

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4. 학교폭력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가. 기간: 2022. 3월중

나. 장소: 부안Wee센터(집단상담실)

다. 대상: 초·중·고등학교 인성인권부장, 학교전담경찰관,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라. 내용: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 대책 협의 및 합동생활교육 방법(일정) 논의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

가. 일시: 2022. 4월 중

나. 장소: 부안교육지원청 종합교육관 시청각실

다. 대상: 초·중·고등학교 인성인권 및 생활담당

라. 내용: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생활교육을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6. 2021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연수

가. 일시: 2022. 4. 12.(상·하반기 1회)

나. 장소: 부안교육지원청 소회의실

7. 2022학년도 학생 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

가. 기간: 상반기 중 실시 예정

나. 장소: 추후안내

다. 대상: 관내 초·중학교 학생회 임원(교당2명씩): 70명(초등 44명, 중등 26명)

라. 내용: 학생회 임원의 인권 및 민주시민교육과 리더십 함양 교육

※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8. 여름방학 합동교외 생활교육

가. 기간: 2022. 7.~ 8.

나. 장소: 부안군 일원(유홍가, 노래방, PC방 등 취약지구), 변산 격포 해수욕장

다. 대상: 유관기관 및 인성인권 담당교사 20명

라. 내용

- 학생 보호 및 학생 폭력 예방 지도
- 성폭력·성추행·성희롱·성폭행 예방
- 여름 방학 기간 중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지도
- 남, 여 혼숙 및 풍기 문란(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 행위
- 유원지 질서, 청결, 규범 및 폭력 상해 사고 예방
- 음주, 흡연 예방 지도
- 유원지, 우범지역, 안전사고 위험 예상 지역 순회 순찰 지도

9.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전·후 합동교외생활교육

가. 기간: 2022. 11~12.

나. 장소: 부안군 일원(유홍가, 노래방, PC방 등 취약지구)

다. 대상: 유관기관 및 인성인권 담당교사 20명

라. 내용

1) 연말연시 및 학기말 방학 전·후 학생생활지도 강화

가). 결석 또는 결과 시 원인 확인 및 학부모와 정보 공유

나).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의 학생지도 철저

다). 학생생활 및 시험성적 관련 내실 있는 상담 실시

특히, 시험 후 성적이 저조하여 고민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격려) 강화

※ 학생 생활 및 진로(진학)관련 상담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인격 존중

2) 귀가 지도

가) 하교 후 불필요한 배회 및 우범지역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

나) 등·하교 중 유사시 부모 또는 학교에 알리고, 하교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부모님께 자신의 행선지를 알리도록 교육

※ 비상연락망 정비(학생 및 학부모 연락처 재확인)

3) 유관기관(단체)과의 협조체제 확인 및 유지

- 가)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청소년 선도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 나) 학교담당 경찰관과 청소년 선도관련 민간단체 연락처 재확인

10. 학년말 및 연말 연시 합동교외생활교육

가. 기간: 2022. 12.

나. 장소: 부안군 일원(유홍가, 노래방, PC방 등 취약구역)

다. 대상: 유관기관 및 인성인권 담당교사 20명

라. 내용

1) 연말연시 및 학기말 방학 전·후 학생생활지도 강화

- 가) 결석 또는 결과 시 원인 확인 및 학부모와 정보 공유
- 나) 학생생활 및 시험성적 관련 내실 있는 상담 실시

※ 학생 생활 및 진로(진학)관련 상담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인격 존중

2) 귀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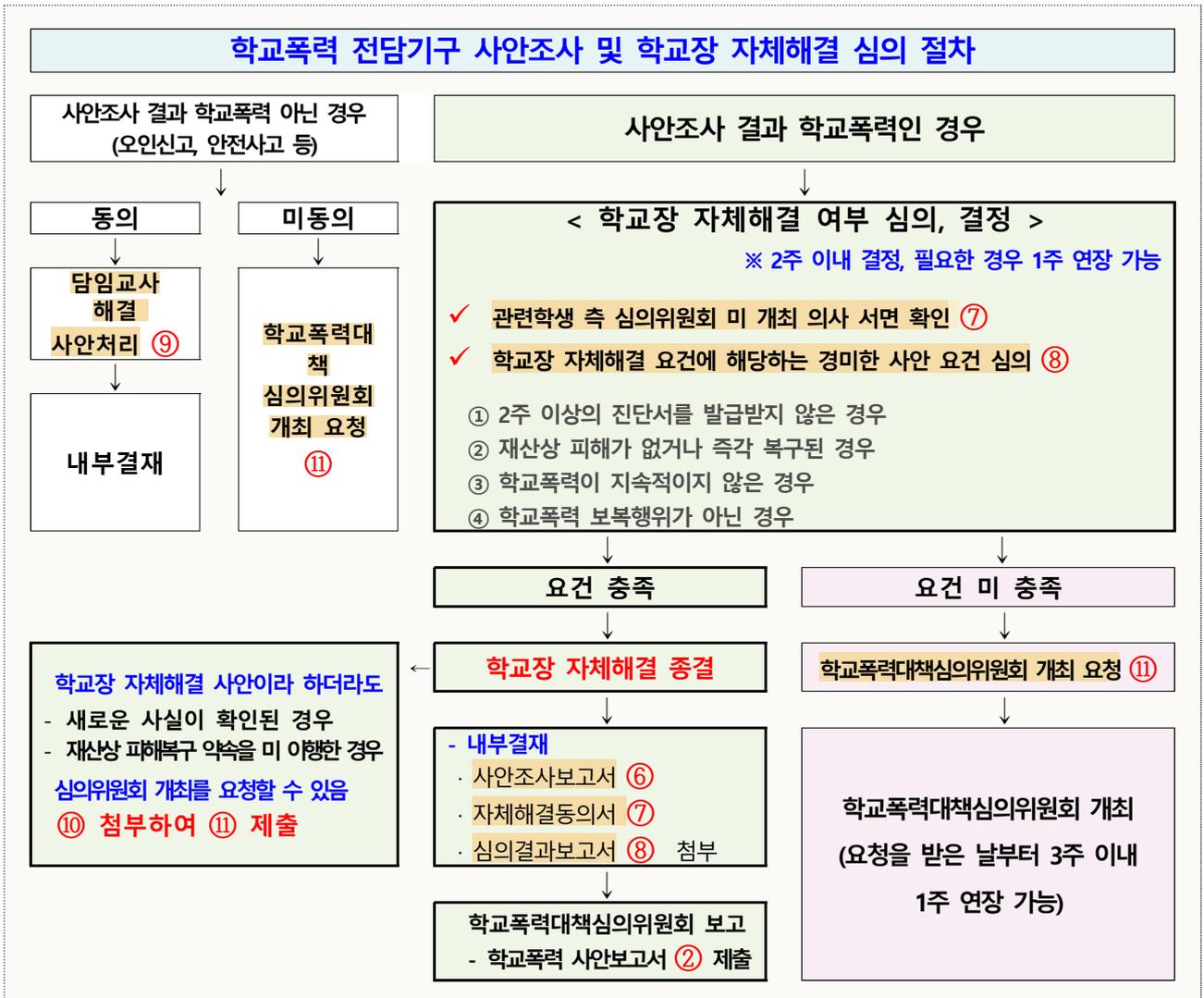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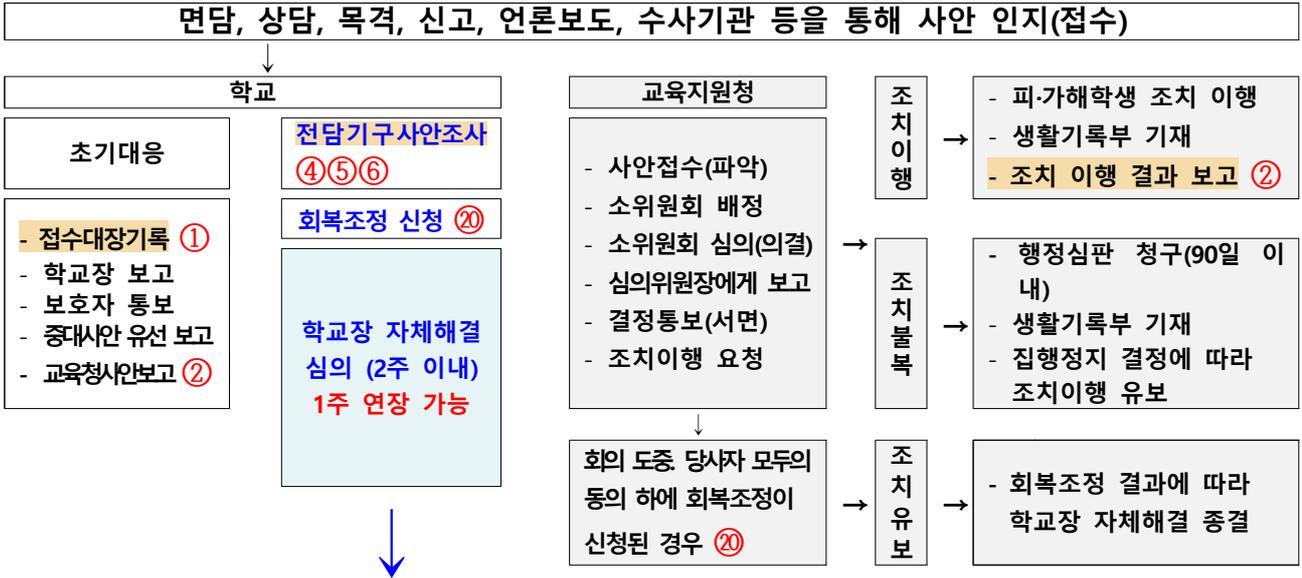
- 가) 하교 후 불필요한 배회 및 우범지역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
 - 나) 등·하교 중 유사시 부모 또는 학교에 알리고, 하교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부모님께 자신의 행선지를 알리도록 교육
- ※ 비상연락망 정비(학생 및 학부모 연락처 재확인)

3) 유관기관(단체)과의 협조체제 확인 및 유지

- 가)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청소년 선도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 나) 학교담당 경찰관과 청소년 선도관련 민간단체 연락처 재확인

부록 3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제9항

✓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원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생활기록부 기재	생활기록부 미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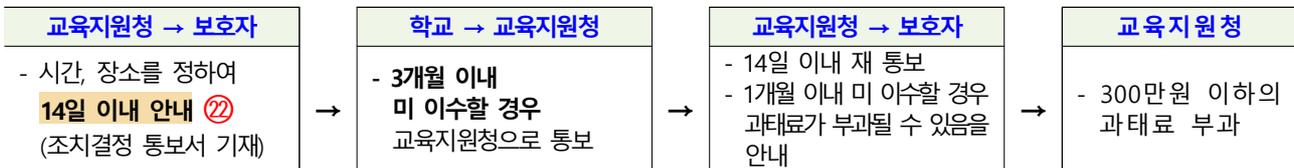
✓ 가해학생이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및 원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 특별교육 발생
※ 가해학생 심리치료 : 보호자 특별교육 미 발생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조치

✓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내린 경우,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발생

- 통보방법: 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2주 이내 서면으로 통보
- 이수기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특별교육이수 권장시간 (학교폭력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원 조치에 추가되는 특별교육)

가해학생 조치	특별교육 추가 여부		권장시간
	학생	보호자	
1호(서면사과), 9호(퇴학)	×	×	-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	○	4시간 이내
5호(특별교육이수)	×	○	5~8시간 이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기간의 제한이 없음

특별교육기관 지정 현황 (Wee클래스 및 학교 상담실을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 적극 활용)

지역	단기 특별교육기관	
	위(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	063-253-9214(덕진), 063-253-9523(완산)	063-273-1411(전북), 063-236-1388(전주)
군산	063-450-2680	063-468-2870
익산	063-850-8990(제1), 063-852-4501(제2)	063-856-2008
정읍	063-530-3080	063-531-3000
남원	063-635-8530	063-633-1977
김제	063-540-2551	063-544-1377
완주	063-270-7687	063-291-7373
진안	063-430-6294	063-433-2377
무주	063-780-7002	063-324-6688
장수	063-350-5228	063-351-2000
임실	063-640-3571	063-644-2000
순창	063-650-6322	063-653-4646
고창	063-560-1613	063-563-6793
부안	063-580-7483	063-581-5839
전문기관	청소년꿈키움센터(063-277-9890), 전북 스마트쉼 센터(063-288-8496)	

● 위탁교육시설 현황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운영)

순	지역	기관명	연락처	순	지역	기관명	연락처
1	전주	꿈누리교실	063-253-2276	12	군산	다음세대학교	063-452-6326
2	전주	나-움트리학교	063-236-9801	13	군산	군산YMCA	063-446-4122
3	전주	민들레학교	063-283-1356	14	익산	익산시청소년수련관	063-838-1700
4	전주	명주골학교	063-247-8311	15	정읍	샘고을집강소	010-6423-9620
5	전주	움티학교	063-285-4344	16	남원	남원시청소년수련관	063-625-3363
6	전주	어울림힐링학교	063-237-1134	17	무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063-323-2646
7	전주	전주YMCA	063-272-4466	18	고창	희망샘학교	063-562-2811
8	전주	가람학교	063-224-0316	19	고창	책마을해리	070-4175-0914
9	전주	선너머학교	263-232-0334	20	대전	해맑음센터	070-7119-1707
10	군산	가온누리희망타운	070-8738-1318	21	용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70-4420-1933
11	군산	산돌학교	063-446-4460				

부록 4

성관련 사안 대응 체계 강화

■ 성 관련 사안의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중략)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등): 학교폭력에 포함

●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안은 학폭법을 적용하여 적절한 보호와 교육적 조치를 하여야 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엄정 대처(사법적 처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교육적 선도 조치

● 사안보고: 48시간 이내 사안보고(중대 사안은 즉시 유선보고)

- 보고절차(FAX): 각급학교 → 관할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신고의무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 -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종사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사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신고기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전문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성폭력 전문기관과는 별도로 수사기관(경찰, 학교전담경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교직원이 개인상담 과정을 통해 피해사실을 안 경우, 피해자에게 신고의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 관련 법률에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 여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률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비밀누설 금지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는...(중략)...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	-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성 관련 사안 조사 및 자치위원회 개최

● 성 관련 사안조사 유의사항

○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따르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가해학생과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통한 심신안정, 비밀유지, 인권보호 철저
-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전문기관 연계 및 맞춤형 지원 필요
-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을 동석할 수 있게 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동성 조사자에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관련학생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강제적인 조사로 인해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관련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진술권 행사 제약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특성을 감안하여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함

●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피·가해학생 구분이 불명확할 때)

○ 성관련 사안은 사안 초기에 피·가해학생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육부 지침에 따라 3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3주 이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사진행 상황, 수사결과 전 관련학생 조치 방안 등을 논의 후 조치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리고

○ 차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피·가해학생 조치를 결정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인 경우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교가 다른 경우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
- 학교의 여건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해 A와 B학교에서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각의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교는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내리고 있음
- 이때,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 경우
 - 피해학교 측은 피해학생 의사에 따라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미 개최 동의서 필요)
 - 가해학교 측은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내려야 함

● 학교장 선 조치: 피, 가해학생 구분이 명확한 사안인 경우에만 가능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 가해자는 수사기관의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
- 피해학교는 피해학생 의사에 따라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미 개최 동의서 확인)

-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피해학생 측은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서면진술로 대체 가능(사전고지)

- 가해학생이 검찰 및 경찰에서 처분을 받고 온 경우

- 검찰 및 경찰의 처분과 학교폭력법상의 교육적 조치는 별개이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 피·가해학생을 위한 대책

● 피해학생을 위한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력 회복을 중점으로 하는 상담 및 보호조치 실시
 - 피해학생 중심의 사안처리 실시
- 피해학생이 결석하는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필요)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 마련
- 성적 등의 평가에서 불이익 금지(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성적 산출)
- Wee센터, 성폭력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 성매매 범죄로 검사의 수강명령 및 교육, 상담과정을 이수한 경우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

● 가해학생을 위한 대책

-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 강화(이수시간 등)
- 성 관련 전문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지정하여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 조기 교정교육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이수 권장

■ 성폭력 사안처리 유의사항

- 성 관련 사안을 인지할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수사기관: 경찰, 검찰, 학교전담경찰관 등(성폭력 전문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님)
 - 피해자 측이 신고를 원치 않더라도 교직원의 신고 의무를 고지한 후 반드시 신고
- 피·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일 경우 공동자치위원회 개최(권장)
-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 학교는 3주 이내에 자치위원회 개최
 - 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수사 진행 중인 사안임을 통지
 -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학생에 대한 대책 논의 및 ‘조치유보’ 결정
 -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자치위원회 재개최: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으로 응급조치, 상담, 법률적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역명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운영 주체
전주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부설	완산구 인정 2길	236-0151	사)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새벽이슬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완산구 신봉 3길	223-3015	사) 행복나눔지원센터
	호남 성폭력 상담소	덕진구 송천 2길	286-1366	개인
	전주 다솜 성폭력 상담소	완산구 백야산길	223-5683	개인
	전북해바라기센터(구 원스톱지원센터)	덕진구 건지로	278-0117	전북대병원
	해바라기센터(아동)	덕진구 백제대로	246-1375	여성가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덕진구 기린대로	251-4034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 1366	완산구 효자로	227-8832	여성가족부
군산	군산 성폭력 상담소	군산시 구영 7길	442-1570	개인
	로댐 성폭력 상담소	군산시 구영 6길	445-9192	개인
익산	익산 성폭력 상담소	익산시 익북로	834-1366	개인
정읍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정읍지부	정읍시 충정로	537-1366	사)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시민성폭력상담소	정읍시 충정로	536-1369	개인
남원	남원 YWCA	남원시 시청로	625-1316	사) 남원 YWCA
	남원 성폭력 상담소	남원시 요천로	635-0711	개인
김제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김제지부	김제시 금성로	546-8366	사) 성폭력예방치료센터

1. 정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중략~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2. 신고 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 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비밀누설 금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4. 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되, 초등학교는 제외한다)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6.>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부록 5

학교폭력 및 생활관련 의무교육 안내

분야	대상	필수 시행 횟수 및 시간	방법	근거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 4시간) 이상	정규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포함) 수업시간에 실시 권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	
	학부모	학기별 1회 이상	학교설명회, 학부모 연수 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기별 1회(연 4회) 이상	사안이 없어도 의무 실시함	
인권교육	학생	학기별 2시간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편성 노동권 관련 내용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식 개선교육 포함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30조~제32조
	교직원	연 2회 이상	교원에 대한 직무 및 자격연수에 학생 인권교육 과정 편성	
	학부모	연 2회 이상	인권 관련 교육 및 간담회	
인성교육	교원	연 4시간 이상	교원연수계획 반영 연수 이수기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3항
	학생	시간 및 횟수 미정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생	연 1회 1시간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 편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교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 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2개월 이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직원	연 1회 1시간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생	연 1시간 이상	결과를 매년 3월 교육감에게 보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성폭력	학생	연 1회 1시간 이상	대면(對面)교육의 방법 포함 필수	성폭력방지 및

분야	대상	필수 시행 횟수 및 시간	방법	근거
예방교육	교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 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2개월 이내 대면(對面)교육의 방법 포함 필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 예방교육	교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대면(對面)교육의 방법 포함 필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공공기관 의 성희롱 예방 지침(여성가족부 고시 제2008-2호)
성매매 예방교육	학생	연 1회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초등학생 제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교직원	연 1회 1시간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대상 신규 임용된 사람의 경우 2개월 이내	
성교육	학생	학년별 연 15시간 이상 (성폭력예방 3시간 포함)	교육과정에 편성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포함	학교보건법 제9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학생	학년별 연 4시간 이상	‘생명존중교육 길라잡이’ 교재를 이 용한 생명존중교육 강화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1항
안전교육	학생	연 51시간	학교안전 7대 표준안에 따른 영역별 최소 1차시 이상 편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1항
	교직원 등	3년 15시간 이상	교직원 등: 3년 15시간 이상 3년 미만: 6개월마다 2시간 이상 교육활동참여자: 연간 1회 이상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6-90호)